

회원동호회 운영규정

제정 2018. 11. 21.

개정 2021. 10. 19.

개정 2023. 12. 20.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원동호회의 등록 및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동호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와 협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4조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축사회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건축사회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회원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체육, 교양, 문화·예술 등에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 회원들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동문회, 향우회 등 학연·지연·종교·정치를 위주로 하는 모임은 제외한다.

제4조(등록 기준) 협회에 동호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9개 이상의 시도건축사회에 각각 정회원 5인 이상이 가입하여야 한다.
2. 각 동호회의 회원 중 협회 정회원이 총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전국규모 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등록절차 등) ①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 회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협회 회원동호회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1부
 3. 동호회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1부
 4.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5. 전국규모 사업결과 보고서(등록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 ② 협회 회장은 동호회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동호회의 등록 적격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소관위원회에서는 해당 동호회가 이 규정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협회 회장에게 의견서(적격, 부적격)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④ 협회 회장은 동호회 등록 심사결과 적격 의견을 받은 동호회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승인하고, 부적격 의견을 받은 동호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불승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신규 등록하는 동호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하여 이미 등록된 동호회 예산지원금외에 별도의 신규등록 동호회 지원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의 준수사항) ①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호회 활동에 있어 “대한건축사협회 ○○동호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2. 협회의 설립 목적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협회 및 건축사의 명예와 품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동호회의 목적에 맞도록 건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동호회 활동에 있어 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동호회는 해당 동호회의 임원 선출에 있어 협회 정관을 위반하여 징계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호회 현직 임원이 임기 중 정관을 위반하여 징계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6. 동호회는 행사에 참가하는 정회원(동반자 포함)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7. 동호회는 행사 안전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동호회는 행사 개최 전 행사명, 개최 일시 및 장소, 참가인원, 안전조치(사전 및 현장 안전관리 조치방안, 사고 초동대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동호회는 행사 전 사전 안전조치(안전교육 및 준비운동 등)를 시행하여야 한다.
 - 다. 동호회는 집행부 관계자가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라. 동호회는 행사현장에 안전요원 또는 구급요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소관위원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동호회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동호회 등록취소) ① 협회에 등록한 동호회의 등록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의 활동 중 협회 및 건축(사)계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거나, 건전성을 상실하여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당해 동호회의 등록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자격에 연속 2회 이상 미달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등록 취소 의결한 때
- ② 협회에 등록한 동호회가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협회에 등록한 동호회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회장은 등록을 취소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 회장은 동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 운영자금은 동호회 회원의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협회 총회에서 승인된 당해연도 동호회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 ③ 협회에 등록한 동호회의 예산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년도 협회 예산(안) 편성시 익년도 전국규모 행사(동호회 회의 및 워크숍 등은 제외)에 대하여 동호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동호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2. 동호회는 각 동호회에 대한 당해연도 지원금 배분액 산출을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동호회 사업계획서 및 회원명부(동호회 임원진 명단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동호회 지원예산 총액의 20% : 지원대상 동호회에 균등 배분한다.
 - 나. 동호회 지원예산 총액의 60% : 지원대상 동호회의 직전년도 행사 시 보험에 가입하고 참가한 정회원의 수를 기준하여 배분한다.
 - 다. 동호회 지원예산 총액의 나머지 20% : 각 동호회의 협회에 대한 기여도와 활동실적, 당해연도 동호회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
- ④ 동호회에 대한 협회 예산지원금 배분은 소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호회 지원예산액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회 예산(안) 편성시 익년도 동호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당해연도 동호회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9조(예산지원 신청) ① 협회에 등록한 동호회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예산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예산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당해연도 사업결과 보고서(결산내용 포함)

② 협회는 예산지원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동호회 지원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동호회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자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회 동호회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호회 중 등록 기준이 미달된 동호회는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신규 등록하는 동호회의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협회에 신규로 등록하는 동호회의 등록 기준은 제4조를 준용하되 이 규정 제4조 제1호에 한하여는 5개 이상의 시도건축사회에 각각 정회원 5인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제1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동호회 등록 신청서

명 칭	대한건축사협회 ○○○동호회		설립일자	
목 적				
회 장	성 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이 메 일	
총 무	성 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이 메 일	
회원수				
첨부서류	1. 동호회 회칙 1부 2. 동호회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1부 3.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4. 전국규모 사업결과 보고서(등록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기 타				

위와 같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동호회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호회장)

(서명 또는 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동호회 예산지원 신청서

신청인	동호회명			
	동 호 회 장	(성 명) (사무소명) (이 메 일)	(전화번호)	
	동 호 회 총 무	(성 명) (사무소명) (이 메 일)	(전화번호)	
행사개요	1. 행 사 명 : 2. 일자/장소 : 3. 참 석 인 원 :			
지원자금	총 사업비	원	지원요청액	원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 행 명 : (예 금 주 :)		
대한건축사협회 동호회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당해연도 사업결과 보고서(결산내용 포함) 1부 년 월 일 신청인(동호회장) (서명 또는 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